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56 호
긴쏘	

제출일자	2004. 11. 15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개정이유

관련 법령의 개·폐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.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 - ⇒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- 나. 특별회계 설치·운영 목적에 관리사업 추가
 - 관리사업 : 지원시설, 공공시설, 녹지시설 등의 관리
- 다. 상위 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정비
 -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⇒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- 라.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
 - 농공지구 ⇒ 농공단지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- 1) 신・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- 2) 입법예고 결과(2004. 9. 24 ~ 2004. 10. 16)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농공지구조성사업"을 "농공단지사업"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농공단지 조성사업"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, 기반조성, 진입도로 개설, 전기·통신시설의 설치, 공업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.
- 2. "농공단지 관리사업"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, 공공시설,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.
- 3. "사업자"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·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중 이자 다음에 "선수금"을 삽입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·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, 보조금, 시설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자.
- ③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, 이율,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법제5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"농공지구"를 각각 "농공단지"로 하고, 별지 제2호서식중 "농공지구조성사업"을 "농공단지사업"으로 하며, 별지 제4 호서식중 "농공지구"를 "농공단지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했

제명: 시청시농공자구조성시엄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개발특별 제1조(----)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 조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(이하 "농 공지구"라 한다) 조성계획에 의거 농 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 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농공지구조 성사업"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 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 용지의 매입, 기반조성, 진입도로 개설, 전기 통신 시설설치. 공업용수원개발 등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, 보조금, 상환금, 이자, 타회계의 전 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개 젔 후

제명: --농공단지사업-----

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 특별회 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----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농공단지 조성사업"이라 함은 농 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 입용지의 매입,기반조성, 진입도로 개설, 전기·통신시설의 설치, 공업용 수원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.
 - 2. "농공단지 관리사업"이라 함은 농 공단지내 지원시설, 공공시설, 녹지시설 의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.
 - 3. "사업자"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 치 · 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지를 말한다.

제3조()	
	<u>선수금</u>

현 행	개 정 후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	제4조()
<u>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하는</u> 융자	<u> 농공단지조성 · 관리사업에 소요되는</u>
금,보조금, <u>기반조성비</u> 및 기타 부대	시설비
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	
제8조(융자 및 보조) <u>①시장은 법 제22</u>	제8조() ①시장은 사업자
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내에	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	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사
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사업자"라한다)	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
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	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
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	<u>원할 수 있다.</u>
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	
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, 이율,	3
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<u>중앙농어</u>	법 제5조
<u>촌소득개발위원회의 융자 결정에</u> 따	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
른다.	에 관한 기본지침에

<개정전>

[별지 제2호 서식]

시설자금 <u>농공지구</u> 입주자금 - 운전자금 - 융자(보조)신청서 분양자금 -

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

- 1. 소 요 액:
- 2. 신 청 액:
- 3. 첨부서류 :
 - 가. 사업계획서 1통
 - 나. 설계서 1부 (분양자금은 제외)
 - 다. 차용증서 1부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

성명: ①

사 천 시 장 귀하

<개정후>

[별지 제2호 서식]

시설자금 <u>농공단지</u> 입주자금 _ 운전자금 _ 융자(보조)신청서 분양자금 _

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

- 1. 소 요 액:
- 2. 신 청 액:
- 3. 첨부서류 :
 - 가. 사업계획서 1통
 - 나. 설계서 1부 (분양자금은 제외)
 - 다. 차용증서 1부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 성명: ®

사 천 시 장 귀하

<개정전>

[별지 제3호 서식]

차 용 증 서

차용금

워정(₩

시설자금 위 금액을 사천시 <u>농공지구</u> 입주자금 운전자금 으로 차용하고 다음 분양자금

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다

시설자금

- 1. 위 자금은 운전자금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음. [분양자금] 2.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.
- 3.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.
- 4.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가짐.

년 월 일

차 용 인 주소

성명

(Q)

)

연대보중인 주소

성명

(Q)

연대보중인 주소

성명

(<u>Q</u>)

<개정후>

[별지 제3호 서식]

차 용 증 서

차용금

워정(₩

시설자금 위 금액을 사천시 <u>농공단지</u> 입주자금 운전자금 으로 차용하고 다음 분양자금

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시설자금

- 1. 위 자금은 운전자금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음. [분양자금] 2.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.
- 3.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.
- 4.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가짐.

년 월 일

차 용 인 주소

성명

(Q)

)

연대보중인 주소

성명

(<u>Q</u>)

연대보중인 주소

성명

(<u>Q</u>)

관계 법령 발췌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第5條 (產業立地開發指針)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에 관한 基本指針(이하 "産業立地開發指針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. 다만, 農工團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産業立地開發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産業立地의 計劃的・體系的 供給에 관한 사항
 - 2. 産業團地의 지정・開發・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環境影響評價를 포함하는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
-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指針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市·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産業資源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. 産業立地開發指針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46條 (資金支援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·團地내 入住業體의 誘致 및 中小企業用 産業用地 賃貸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.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
제3조 (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)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,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(이하 "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"이라 한다)을 작성·고시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 · 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
- 5.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
- 7.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